       (이하 “갑”이라 한다) 와 ㈜다날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Danal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O2O 서비스 사업장 포함. 이하 “상점”이라 한다)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을”의 “Danalpay”를 통해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서비스,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 “갑”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을”의 “Danal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2. 상품: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3. 실물상품: 고객의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4. 디지털상품: 실물상품을 제외한 무형의 상품
5. 지불승인대행: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6. 매입대행 업무: 결제기관의 대금정산에 관한 승인과 별도로 대금정산을 위한 매입업무가 요구될 경우, 해당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을”의 업무
7. 대금정산서비스: “을”의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 업무를 이용하여 “을”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거래의 지불대금을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Danalpay: “갑”이 관리, 운영하는 “상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지불승인대행 및 매입대행 업무, 대금정산 및 기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전자지불 서비스
9. 비정상거래: 고객이 “갑”의 상점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10.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상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나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책임
11. 결제기관: “Danalpay”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함
12. 계좌이체서비스: “고객”이 지불정보를 입력하여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고객”의 거래계좌에서 실시간 출금 이체하여 “갑”이 수취할 수 있도록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행 서비스
13. 지불정보: “고객”이 “갑”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위하여 입력하는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
14. O2O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라 함은 PC 웹이나 스마트폰 웹/앱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 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유치한 후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 3조 (“갑”의 책임과 의무)**

1. “갑”은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채권) 발생 시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 제출 및 비정상 거래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2. “갑”은 “Danal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제 4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이 “Danal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상점”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을”은 “Danal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으로 중단은 예외로 한다)
3. “을”은 고객이 “Danalpay”서비스 이용 시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 (소유권)**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Danalpay”의 모든 구성요소 (Danalpay Plug-in 모듈 포함)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Danalpay 결제창”을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수정한 경우 발생한 문제 손실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서비스 이용조건)**

1. “Danalpay”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 등에 한한다.
2. “Danalpay”에 적용되는 이용자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무선이동통신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Danalpay”에 적용되는 “갑”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7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 “Danalpay”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8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1. “갑”은 “Danalpay”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등록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경우, “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연회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정한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5.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 9조 (서비스 수수료)**

1. “갑”은 “Danalpay”를 이용하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3.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대금정산)**

1. “을”은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Danalpay”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2. 전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및 배부한다.
3. “을”은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갑’의 대금정산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갑’은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대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등 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법원의 압류, 명령 및 보전 처분 등

2) 수사기관의 입건 및 기소

3)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⑤ 대금 정산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⑥ “갑”과 “을”은 “Danalpay”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⑦ “갑”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갑”이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⑨ “을”의 지불승인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

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 “갑”은 이용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거래 발생일로부터 표준배송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⑪ “갑”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1조 (고객민원의 처리)**

1. “갑”은 “Danalpay”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2. 고객과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고객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Danalpay”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4. “을”은 고객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12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1. “을”의 “Danal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거래 가운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객이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거래에 대하여 “갑”은 “을”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역 관련자료와 함께 제 3조 ①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요청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을”은 해당 거래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3.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을”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을”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Danalpay”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하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갑”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Danalpay” 중지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갑”의 “상점”에 대해 비정상 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경우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을”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3)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 13조 (매입)**

1.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한다.
2. “갑”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자동매입선택가맹점 제외)
3.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거래 건은 “갑”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을”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을”과 결제기관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제 14조 (승인제한)**

1.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결제기관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5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1.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Danalpay”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 시 계좌이체 시 발생한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Danalpay”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3) “갑”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을”은 “고객”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갑” (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3.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4. 계좌이체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모계좌를 이용한 출금이체 방식이므로 “고객”의 계좌에 “금융결제원” 또는 “을”의 명의로 출금되는 사실을 “갑”은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갑”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수행한 후 계좌이체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은 계좌이체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배송, 대금의청구 및 정산관련 자료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5조의2 (계좌간편결제 서비스 특칙)**

1. 케이뱅크 계좌간편결제 서비스

1) 케이뱅크 계좌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케이뱅크”의 앱 및 케이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는 제15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2) 수수료는 “케이뱅크” 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3) 수수료율이 변동될 경우 “을”은 “갑”에게 제15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별도 고지한다.

**제 16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1.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본 계약의 제 10조 내용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 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2.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3. 거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거래취소: 특정 결제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적용  
   2) 결제금액 환불: 거래취소 이외의 경우에 적용
4.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3)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5. “갑”이 수납정산을 이용할 경우 “을”은 정산대상월의 차익월부터 24개월(24회차)까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정산대상 월의 “결제금액” 중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종료한다. 다만, 위 정산금액 지급기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통신회사의 기한 단축정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또한 “통신회사”가 고객에 대한 별도의 수납비용(채권추심에 따른 비용 등)을 차감하고서 “을”에게 결제금액을 지급한 경우, “을”은 위 차감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그 차감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 “갑”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6조 1항’에 의거 “을”이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하여야 하고, “을”이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갑”에게 있다.
7.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 “을”의 휴대폰 결제의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결제 선정산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17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특칙)**

1. “갑”은 “을” 또는 “결제대행사”의 명의로 신용카드대금이 청구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약관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고객”의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3. “갑”은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갑”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정보가 신용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결제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시스템 등록, 가맹점 가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다.
5. 거래승인은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여부 및 본인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6. 제 2항과 관련하여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7.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 클레임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승인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8.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승인한도 제한, 승인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을” 또는 “결제대행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갑”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영·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 부칙1에 정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9년 1월 31일 시행) 제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적용한다.
10. 전 항에 의한 가맹점 분류와 분류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갑”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  |  |
| --- | --- |
| 분류 기준일 |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간 |
| 매년 6월 30일 | 해당연도 7월 31일  ~ 다음연도 1월 30일 |
| 매년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31일  ~ 7월 30일 |

**제 18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1. 상품권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중 “Danal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3. “갑”은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상풍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9조 (거래정보의 제공)**

1. “을”은 해당기관(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갑”은 “Danal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고객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3. 전 1, 2항과 별도로 “을”은 “Danalpay”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 20조 (손해담보물 제공)**

1. “갑”은 본 건 “Danalpay”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Danalpay” 이용계약 기관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Danalpay”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3. “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5. “갑”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을”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을”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갑”은 이를 제 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1. “갑”과 “을”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갑”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확인 인증을 완료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갑”은 “Danalpay” 계약 체결 후 “을”이 요청하는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등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3. “갑”은 “Danalpay” 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상점” 등록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4. “갑”은 “Danalpay”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 22조 (계약의 변경, 연장 및 해지)**

1.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간 “을”의 “Danalpay”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 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5)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상점 외 제 3의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4. “갑”은 계약해지 후 “Danal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6. 계약서 제 10, 11, 12 조의 효력은 “Danalpay” 이용계약의 해지 시에도 고객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7.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변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3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1.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 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Danalpay” 서비스를 제 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 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갑”이 “Danal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24조 (개인정보보호)**

1. “갑”과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갑”은 “Danal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1. “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신속히 응해야 한다.
2. “갑”이 전 항에 따른 “을”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6조 (손해배상책임)**

1.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 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제 27조 (분쟁의 조정)**

1. 별도의 부칙이나 특약이 있을 경우, 부칙이나 특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3. “갑”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사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조 (기타)**

1. “갑”은 “을”의 상호로 “Danalpay”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점”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상점”을 통한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을”의 “Danalpay”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의 “Danal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3.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4. “Danal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사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을”은 “Danal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갑: 이용자)** | **(을: 제공자)** |
| 상 호 명: | 주식회사 다날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
| 대표이사: (법인/개인인감) | 대표이사 박 상 만 (인) |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 **인감도장으로 날인** |  |

**부칙1**

**사업자등록 사항**

|  |  |  |  |
| --- | --- | --- | --- |
| 사업의 형태 | 개인 법인 간이과세 | 과세유무 | 과세 비과세 |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이트주소 |  | 법인번호 |  |
| 대표자이름 |  | 대표자생년월일 |  |
| 대표자영문이름 |  | 사업장주소 |  |
| 업태 |  | 종목 |  |

**실무사항**

|  |  |  |  |
| --- | --- |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이름 |  | 부서명/직위 |  |
| 긴급연락처 |  | 이메일 주소 |  |

**계약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제서비스** | **신청** | **수수료(VAT 별도)** | | | **정산주기** | **특이사항** |
| 휴대폰결제 |  | 디지털 | % | |  | **선정산 시 관련 특약서 반드시 첨부** |
|  | 실물 | % | |  |
| 신용카드 |  | **통합** | **%** | |  | 상점부담 카드무이자할부 |
| KB | % | | 사용  미사용 |
| 신한 | % | | 우대수수료 (영세, 중소 사업자) |
| 롯데 | % | |  |
| BC(은련) | % | | 영세 : % |
| 현대 | % | | 중소1 : % |
| 삼성 | % | | 중소2 : % |
| NH | % | | 중소3 : % |
| KEB하나 | % | |  |
| 실시간계좌이체 |  | 최저 | 300 원 | |  |  |
| 일반 | % | |
| 케이뱅크 계좌간편결제 |  | 최저 | | 원 |  | 케이뱅크 계좌번호: |
| 일반 | | % |
| 가상계좌결제 |  | 원 | | |  | 환불서비스신청 수수료   원 |
| KT폰빌결제 |  | % | | |  | **선정산 시 관련 특약서 반드시 첨부** |
| 문화상품권 |  | % | | | M+1개월 | 익월 말일 정산(휴일일 경우 전일지급) |
| 스마트문상 |  | % | | | M+1개월 | 상동 |
| 해피머니상품권 |  | % | | | M+1개월 | 상동 |
| 북앤라이프캐시 |  | % | | | M+1개월 | 상동 |
| 틴캐시 |  | % | | | M+1개월 | 상동 |
| 모바일티머니 |  | % | | | M+1개월 | 상동 |
| 초기 등록비 | -     원 | | | | 연 관리비 | -     원 |
| 보증금 | 보증보험       만원 | | | |  |  |
| 기타사항 |  | | | | | |

**특약 서비스 신청**

|  |  |  |  |
| --- | --- | --- | --- |
| **서비스 종류** | **신청** | **서비스 상세 신청** | **정산주기** |
| 해외카드 |  | 원화 미화 엔화 중복선택불가 | 신용카드와 동일 |
| 정기결제(빌링) |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중복선택가능 | 결제수단별 동일 |
| 기업형SMS서비스 |  | SMS LMS |  |
| 본인확인서비스 |  | 월정액제 건당제 |  |
| 에스크로서비스 |  |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복선택가능 |  |
| PCI 결제서비스 |  |  |  |

20     년      월      일

|  |  |
| --- | --- |
| 상호 |  |
| 대표 | (인) |
|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다날 귀중**

**부칙2**

주식회사 다날(이하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을”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2.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3.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4. “을”의 상품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홍보, 이벤트 안내, 통계작성 등의 업무목적
5.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호명, 대표명, 홈페이지 주소, 고유식별정보(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 종목,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정보(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정보(상품명, 상품금액, 구매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을”은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 **내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본인확인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갑”은 “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인) |

**부칙3**

      (이하 “갑”)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을”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위탁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1)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제공 받는 자** |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 항목** |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국민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국세청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록및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 국내 22개 은행 및 18개 증권사, 금융결제원 |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 ㈜SKT, ㈜KT, ㈜LGU+ 및 MVNO 사업자 |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 ㈜한국문화진흥, ㈜한국페이즈서비스, ㈜해피머니아이엔씨, 아이앤플레이 | 상품권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 VISA, MASTER, JCB, 유니온페이, 은련, 텐센트 | 해외카드(글로벌서비스 포함) 결제서비스 등록 및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 서울보증보험㈜ | 신용보험 가입 및 유지관리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

**2) 개인정보 취급위탁**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을”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제공목적** | 고객상담 업무지원 위탁 수행 |
| **제공받는 자** | 메타넷 |
| **제공 정보** | 상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정보, 대금 입금계좌정보 |
| **제공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3) 예외 고지**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본 동의서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갑”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을”과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고객확인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거래목적 | | 전자지급결제대행 신청(휴대폰결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등) 특약서비스 신청(에스크로, 본인확인, 정기결제 등)       기타( ) |
| 법인 유형 |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기관/단체)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 처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 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 설립 일자 | | 년 월 일 |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 예 아니오 |
| 영리법인 | 법인 구분 | 대기업 　 중소기업 |
| 상장 여부 | 상장 　 비상장 |
| 상장 내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 |
| 비영리법인 | 설립 목적 |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친족 　 기타( ) |
| 증빙 서류 | 정관 　 규약 　 회칙 　 설립허가증 　 인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 ) |

|  |  |
| --- | --- |
| 귀 법인 ∙ 단체가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 진행) | |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상장 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
| 확인 생략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주주명부 　 정관/규약 　 이사회명부 　 기타( ) |
| 확인 서류를 근거로 각 확인 단계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를 확인해 주십시오. | |
| 실제소유자 구분 | **1단계)**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확인됩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일 경우 2-1단계로)  **2-1단계)**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확인됩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일 경우 2-2단계로)  **2-2단계)**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일 경우 2-3단계로)  **2-3단계)**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일 경우 3단계로)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이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  |  |
| --- | --- |
|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국문):  성명(영문): 외국인일 경우 필수 기재  국적: 외국인일 경우 필수 기재  생년월일:  지분율: % |
|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이 중복인 경우 기재 | |
|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국문):  성명(영문): 외국인일 경우 필수 기재  국적: 외국인일 경우 필수 기재  생년월일:  지분율: % |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이하 “갑”이라 한다) 와 ㈜다날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중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2016.9.30.) 및 ‘시행령’(2016.9.30.)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에스크로 서비스: “갑”의 상점에서 구매한 고객의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을 확인하고,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및 거래안전장치
2. 배송등록일: “갑”이 배송장 번호를 입력한 날짜
3. 구매결정 :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가 재화 등의 물품을 수령한 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갑” 또는 “을”이 구매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등에 마련한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
4. 구매확정일: “갑”의 상점에서 구매한 고객이 구매결정을 통하여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 날짜
5. 정산지급일: 정산이 지급되는 날짜
6. 에스크로 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거래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제 3조 (갑의 의무)**

1. “갑”은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배송업체명, 배송장번호)를 “을”에게 배송시점(배송등록일)에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배송정보 미제공에 따른 불이익은 “갑”이 책임진다.
2. “갑”이 지정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배송업체는 배송장번호(배송현황에 대한 조회기능 제공)를 제공하는 업체만 가능토록 한다. 만약 “갑”이 퀵서비스 등 배송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 후 배송정보를 “을”에게 제공 할 시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에 대한 배송정보를 신뢰하되, 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검색 및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갑”이 지도록 한다.
4. “갑”의 상점에서 구매하는 고객 중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약관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 5조 (을의 의무)**

1.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배송정보 수집부터 대금지불까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 중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된 매출 대금에 대해서는 본 특약 제 8조에 따라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1. “갑”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수수료는 부칙에서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 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6. “갑”은 “을”이 제공한 에스크로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7조 (거래 절차)**

1.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갑”은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당일(배송등록일) 에스크로 사업자인 “을”의 시스템에 배송정보를 입력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배송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발송한다.  
   3) 고객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통해 구매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 버튼을 클릭한다(단, 물품의 하자, 변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반품 요청 시 수령을 거부 할 수 있다).  
   4) “을”은 고객에 대한 배송정보 또는 고객의 구매결정을 확인한 후, 본 계약 제 8조에 따라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제 8조 (거래에 대한 정산)**

1. 본 특약에 따라 모든 에스크로 거래 건의 경우 배송등록일이 등록되어야 정산대상이 되며, 구매확정일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
2. “을”은 “갑”에게 제 7조의 거래 절차에 따라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무통장) 정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1) “갑”의 고객이 구매 결정을 통하여 구매 확정을 한 후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2 영업일 후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의 고객이 구매 결정을 통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배송등록일 기준으로 8 영업일 후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주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주기보다 현저히 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배송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제 1, 2항의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4) 단, 본 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정산 지급일이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 에서 정한 지급 수단별 정산 주기보다 선행 될 경우에는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에 의한 정산 주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1. 상기 제 7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갑”이 “을”의 시스템에 배송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고객이 구매결정상에 거절(NO)로 회신 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다. 보류된 정산대금의 지급은 “갑”이 고객과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회신할 경우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갑”이 고객과 협의 후 구매결정 이메일을 재발송 하여 고객이 구매확정 버튼을 클릭한 경우

1. 고객이 직접 구매결정 상태를 구매확정으로 변경한 경우 “을”은 이를 확인하고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상기 에스크로 서비스 정산 기준에 의거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 9조 (취소 및 환불)**

물품의 반품으로 인해 고객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계좌이체:“을”의 계좌이체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을”은 “갑”의 물품반품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승인 수수료 및에스크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② 가상계좌: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은 “갑”이 담당 하며, “을”은 정산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은 “갑”의 물품반품 확인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에스크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이 때 “갑”은 “을”에게 환불할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특약 제8조에서 정한 각 일정에 따라 “갑”에게 대금을 지급 한 후 고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등의 적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령한 후 반품 및 환불을 요구 할 경우, “을”이 먼저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이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갑”의 정산대금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 10조 (기타)**

1. 본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간에 체결된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고,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와 본 특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하며,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갑: 이용자)** | **(을: 제공자)** |
| 상 호 명: | 주식회사 다날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
| 대표이사: (법인/개인인감) | 대표이사 박 상 만 (인) |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 **인감도장으로 날인** |  |

**부칙**

**사업자 정보**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CPID |  | RCPID |  |

**수수료(부가세별도)**

가.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지불수단 종류** | **수수료** | **이용여부** |
| 계좌이체 | 0.3% (최저수수료 200원) |  |
| 가상계좌(무통장) | 200원 (건당/vat별도) |  |

나.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갑”과 “을”간에 체결된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의 지불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라. 에스크로 서비스에 따른 정보 활용 동의

|  |
| --- |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배송정보 및 기타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할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